

기획논문

우리나라 통계행정 60년: 제도적 변천과 주요 활동*

유 홍 립**
김 경 태***

- I. 서론
- II. 통계행정의 역사적 고찰 1: 건국 초기 ~ 경제개발시대
- III. 통계행정의 역사적 고찰 2: 경제사회 발전기 ~ 현재
- IV. 결론: 요약 및 향후 발전방향

〈 요약 〉

우리나라 통계행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향후에는 더욱 역동적인 양적·질적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제도상·정책상의 변화를 겪어 왔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통계행정의 발전 방향을 상정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통계주무부서(현재의 통계청)의 기구, 제도 및 기능의 변화 등을 건국 초기, 정치적 변동기, 경제개발시대, 경제·사회 발전기, 그리고 정보화·지방화·국제화 시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어: 통계행정, 국가통계시스템, 통계청, 통계기구, 통계작성기관]

I. 서론

우리나라 통계행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계기로 공보처에 통계국이 설치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많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향후에는 더욱 역동적인 양적·질적 변화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제도상·정책상의 변화를 겪어 왔는지, 그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에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 이 논문은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60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단국대학교 교수(YHL1223@hanafos.com)

*** 통계청 산업통계과장(gtkim@nso.go.kr)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 통계행정의 발전 방향을 상정해 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 오면서 ‘통계는 국가경영의 인프라’라는 인식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다, 특히 금년 2008년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 이러한 작업의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은 ‘분산형’이라는 기본 골격에 통계청이 주요 일반목적 통계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집중형’ 성격이 가미된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계청은 우리나라 통계의 생산·공급에 있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통계작성의 기준 마련, 조정, 작성 및 공표의 승인 등의 업무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통계주무부서(현재의 통계청)의 기구, 제도 및 기능의 변화 등을 돌이켜 본다면, 우리나라 통계행정의 변천과정을 상당 부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우리나라 정부통계를 관장해 온 주무부서의 기구나 기능의 변천과정을 효과적으로 살펴보려면 나름대로 시대적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 기준으로는 연대별 분류, 정권별 분류, 통계주무부서의 소속기관을 중심으로 한 분류¹⁾, 또는 통계 환경의 차별성을 기준으로 한 분류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나, 이들 기준들은 각자 고유한 특성과 장·단점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 연구에서는 이들 기준들의 속성과 장점을 고루 반영할 수 있으면서 통계행정의 변천 동인을 비교적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건국 초기, 정치적 변동기, 경제개발시대, 경제·사회 발전기, 그리고 정보화·지방화·국제화 시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²⁾

1) 통계주무부서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45년 8월부터 1948년 8월까지의 미군정, 1948년 8월부터 1955년 2월까지의 공보처 통계국, 1955년 2월부터 1961년 7월까지의 내무부 통계국 시절이었으며, 1961년 7월부터 1991년 1월까지 장장 30년간은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시대를 거쳐 1991년 1월부터는 통계청으로 격상되었으며, 현재에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으로 존속하고 있다.

2) 본 연구의 주된 분석 시기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60년간이나, 근대적 의미의 통계활동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일제 강점기와 건국 초기의 통계행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미군정 시대의 통계행정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통계청, 1992; 한국통계진흥원, 2008): 해방이전까지는 1910년부터 조선총독부 국세조사과에 의해 매년 실시된 호구조사와 국세조사, 인구동태조사, 노동기술조사, 가계조사 등이 이루어졌었다. 미군정은 1945년 일본 총독부 시절의 행정조직에 미국 행정조직의 특성을 가미해 통계업무 부서

이러한 시대적 기준에 따라, 본 연구는 해당 시기의 통계관련 환경을 비롯하여 통계작성 기구,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제도 등에 나타났던 핵심적인 변화의 내용은 어떠한지,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를 간략히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통계행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역사적 비교론적 시각에 입각하여, 주로 기존의 관련 논문 및 연구보고서를 정리·분석하는 연구방법을 택하고 있다.

II. 통계행정의 역사적 고찰 1: 건국 초기~경제개발시대

1. 건국초기의 통계

1) 정부수립과 초기 통계기구의 구성

1948년 UN임시한국위원단의 감시아래 한반도의 가능한 지역 내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었고 이어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정식으로 정부가 수립되었다. 건국 초기의 정부조직은 대통령직속하의 1원(심계원), 2위원회(고시위원회, 검찰위원회)와 국무원(내각)을 포함하여 11부로 구성되었고, 국무총리 소속하에 4처가 설치되었다. 11개 부는 내무, 외무, 국방, 재무, 법무, 문교, 농림, 상공, 사회, 교통 및 체신부이었으며, 4개 처는 총무처, 법제처, 기획처 그리고 공보처이었다.

이에 이어, 정부조직법상 공보처 직제가 공포됨에 따라 공보처 내에 통계국이 신설되었다. 당시 통계국에는 통계관실과 서무, 기획, 국세조사 및 인구조사의 4개 과를 두었고 직원은 약 1,000명 정도이었다. 이를 계기로 미군정부 시절 보

를 확장 개편하였다. 기획과 내에 조사기획담당관실과 통계담당관실을 두어 조사담당관은 보고통계업무를, 통계담당관은 조사통계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1947년에는 통계서로 개칭되었으며, 이 기구의 주요 업무는 국민들의 생활필수품 수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15세 이상 국민을 국민 등록표에 등록시켜 이를 집계하는 작업이었다. 당시에는 해외귀환 동포의 수, 월남동포의 수, 그리고 일본인의 귀환자 수에 관한 통계가 작성되었으며, 인구동태통계는 보건과의 인구 통계계에서 담당을 했으며, 조선은행의 조사부에 의해서는 각종 경제통계가 작성되었다.

4 한국조직학회보 (제5권 제2호)

건후생부가 담당하고 있던 인구동태조사가 통계국으로 이관되었다.

그 후 통계국의 조직은 1950년 3월 직제개정으로 종전의 통계관실과 서무과가 폐지됨으로써 3개과로 축소되고 직원 수도 600명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공보처의 통계국외에 다른 원, 부, 처, 청 등 각 기관에도 총무과나 서무과 또는 문서과 내에 통계담당을 두고 소관업무와 관련된 행정통계를 담당토록 하였다.

민간부문에서는, 1950년 5월에 한국은행법의 제정으로 신설된 한국은행이 조선은행의 업무를 이어 받았고, 금융·재정에 관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조사와 통계를 담당하는 조사부를 설치하였다.

2) 주요 통계활동

공보처 내에 통계국이 신설되고 대통령령으로 ‘총인구조사시행령(1948.12)’이 공포된 데 이어 1949년 초에는 인구조사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건국이후 최초로 공식통계가 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비록, 이 법에 의하면 총인구조사는 10년을 주기로 실시하되 매5년마다 간이총인구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으며, 총인구조사는 서기로 5 또는 0이 끝나는 해에 실시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기는 하나, 당시에는 종합경제정책의 시급한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1949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총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³⁾. 이 같은 인구조사에 관련된 법률적 기반들은 인구조사가, 비록 정교하지도 않았고, 막대한 수준이었지만, 경제시책의 기본이라는 인식하에 정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상주인구조사는 1896년에 제정된 호구조사규칙을 기본으로 하여 매년 실시하기로 한 조사로서, 인구총조사와 함께 우리나라 통계조사의 근간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사가 정착하게 된 것은 전쟁의 혼란을 겪은 후인 1955년부터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주인구조사는 행정계통을 통한 보고통계로서 총인구조사에 비해서는 신뢰성이 다소 낮은 조사였으며 주로 행정기관 내에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인구동태조사는 ‘인구동태조사령’을 근거로 ‘인구동태조사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948년분부터 조사하였다.

3) 그러나 이듬해의 6.25동란으로 인해 특성인구현황은 집계하지 못하고, 단지 총인구수에 도별, 연령별, 직업별 개황만을 파악하는데 그쳤다. 실질적 의미의 센서스, 즉 인구조사는 1960년에 가서야 비로소 이루어졌다(송문섭, 2001).

그리고 1950년부터는 서울 거주 120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조사를 시작했으며, 1959년에는 가계조사로 이름이 바뀌면서 표본의 수를 600 가구로 늘렸다. 이 조사가 갖는 통계학적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률이론에 의한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점이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지만, 당시 통계국에서 실시하였던 또 다른 표본조사의 사례로는 약 4,000 가구에 대한 경제활동을 조사하였던 노동력조사가 있었다.

이상의 통계 외에도, 공보처 통계국은 산업시설 및 근로실태조사, 자원 및 생산량조사, 정부기관형태조사, 주택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밖에 농업통계는 농림부직제에 의하여 장관비서실 조사통계과에서 경지면적, 농가호구수 등 농업기본통계를 담당하였으며, 농정과에서는 식량작물생산량을, 그리고 축정과에서는 가축통계를 담당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기관인 한국은행에서는 금융, 물가⁴⁾, 임금관련 통계들을 중점적으로 작성하였다.

2. 정치적 변혁기의 통계

1) 혼란기의 통계행정

우리나라의 통계활동은 6.25 동란을 거치면서 일시 위축되었으나, 전후 부흥기인 1955년 2월에 정부조직이 바뀌면서 통계조직도 새롭게 재편되었다. 당시 공보처가 공보실로 바뀌면서 공보처 내에 있던 통계국이 기획과, 국세조사과, 인구조사과라는 직제는 그대로 유지된 채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나, 인원수는 600명에서 400명 선으로 감축되었다.

그 뒤 내무부의 직제개정(1957)으로 통계관(서기관 1명, 사무관 2명)이 부활되고 과의 명칭도 통계기준과, 인구통계과, 경제통계과, 제표과로 재정비되었다. 즉, 종전의 기획과가 통계기준과로 되고, 국세조사과와 인구조사과를 합하여 인구통계과로 된 반면, 경제통계과와 함께 자료처리업무를 담당할 제표과를 새로 설치하였다. 이처럼 통계국의 조직과 기능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직원의 수

4) 원래 물가통계는 1910년 한국은행 전신인 조선은행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하는데, 1947년에는 초기부터 이용되었던 단순기하평균방법이 가중산술평균방법으로 개편되어 오늘날의 합리적인 도매 및 소매물가지수로 발전되어 왔다.

는 대폭 축소되어 정규직 58명과 임시직 195명(합계 25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당시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따른 정부기구 축소방침에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통계기구가 약화되자 내무부 통계국은 「통계행정강화요강」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시켰다. 이 요강의 요지는 해방이후 수차례의 통계기구 개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담당직원의 감축과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통계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고 각 정부기관에 분산된 통계기능을 종합조정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으므로 통계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이 「통계행정강화요강」에 따라 통계기능의 강화, 통계제도와 통계조사활동의 개선 및 통계간의 종합조정을 도모하라는 내용이었다.

1961년의 군사혁명을 거쳐 정부조직이 재편되면서 1957년에 만들어진 통계국의 조직은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즉, 경제기획원이 설립되면서 내무부산하의 통계국이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으며, 이관 당시 과의 명칭은 종전의 제표과를 편수과로 개칭하였을 뿐 종전의 4개 과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1962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조사분석과가 신설되면서 통계국의 명칭도 ‘조사통계국’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1963년 12월에는 당시까지 경제기획원 부원장보의 계통이었던 조사통계국이 경제기획원 산하의 외국(外局)으로 지위를 격상시킴과 동시에 조사통계국에 있던 조사분석과를 경제조사과로 개칭하여 경제기획원의 종합기획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종전의 편수과를 통계기획과로 변경되었고, 그 밖의 통계기준과, 인구통계과 및 경제통계과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통계정책에 대한 심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내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세조사심의회가 1959년에 신설된 바 있었는데, 이러한 기능은 1962년에는 새로이 설치된 통계위원회에 넘기면서, 종전의 심의회는 폐지되었다.

한편, 농림부에서는 과수준의 통계업무가 지속되었고, 보건사회부에서는 1961년 노동통계과가 신설되었으며, 상공부에서는 조사과를 두어 수출입관련 통계와 생산에 관한 행정보고통계를 작성하였다. 그밖에 문교부, 법무부, 교통부, 체신부 등에서도 필요한 통계를 행정보고를 통해 수집·작성하였고, 서울·부산을 비롯해 각 도(道)에서도 상주인구조사를 비롯한 각종 조사와 행정보고통계를 생산하였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는 전쟁시 중단된 통계업무를 복원하기 위하여 1953년 기구를 개편하여 산업조사과를 신설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산업조사에 착수하였다.

이후 해외조사과를 신설하고, 통계과를 3개 과로 세분하여 국민소득, 금융, 재정, 생산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각종 통계계열을 정비하였다. 이외에 제32차 국제통계협회 총회(1960, 동경)의 참석을 계기로 사단법인 대한통계협회가 설립되어 순수 민간분야에서도 통계활동이 시작되었다.

2) 미국 통계고문단의 활동

1958년 미국 정부의 대외원조처(ICA)는 2차 대전 후 일본의 통계제도와 통계조사체계를 정비했던 경험을 가졌던 미국의 Survey & Research Corporation과 한국 통계의 개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한국 정부와는 한국의 통계제도와 통계조사활동의 개선을 위하여 상기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통계고문단의 활동에 협조토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고문단의 활동은 당초에는 2년 예정이었으나, 1958년 4월에 내한하여 5년간 활동하였다.

통계고문단의 첫 번째 활동은 인구·주택 및 농업 센서스에 관한 것으로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1960년 인구·주택 및 농업 센서스에 관한 조사표의 작성준비, 최종조사표의 작성계획 및 집계문제 등 조사의 실시계획은 관계기관이 직접 담당하되, 관계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국세조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이를 감독하도록 한다. 둘째, 한국은행에서 이미 작성된 농업조사계획은 대체로 원안대로 실시토록 한다. 그리고 셋째, 국내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집계기구는 국세조사위원회 사무국의 관할로 집중시키고 이 기구는 각 기관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러한 건의를 기초로 하여 대통령령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국세조사위원회(위원장: 내무부장관)가 설치되었다. 이 결과 1960년 센서스를 위한 정부 각 부처의 통계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며 향후 통계국이 중앙통계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통계고문단은 1960년 센서스 요원의 해외훈련 등에 대한 측면 지원을 비롯하여 한국 정부의 통계행정 전반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 통계활동⁵⁾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당시 정부는 1959년 통계간행물심의위원회를, 1960년에

5)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열한다면, 자료처리의 적용범위 설정, 통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마련, 조사방법 및 정부통계기구에 대한 점검, 통계관련 법령 사항에 대한 검토 등이 있었다. 이러한 활동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통계체계의 통합에 필요한 계획의 강구에 있었다고 하겠다.

국제통계연구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편찬 자료의 심의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정에 관한 심의를 하였다. 또한 각종 통계조사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들이 설치되어 개최되었는데 이때마다 통계고문단의 자문관이 배석하여 심의를 도왔다. 이후 이들 각 위원회는 통계법이 발효된 후 통계위원회내의 각 분과위원회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통계고문단은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한국정부에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건의하였는데, 통계기구의 개선, 통계요원의 훈련과 지위의 개선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 통계국은 미국의 센서스국과 같이 정부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봉사기관(services)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목적이 아닌 일반 통계는 가급적 통계국에 집중되어야 하며, 통계국은 특수목적의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야 한다.

- 인력과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표본조사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하여 전문 표본조사기구를 설립하여야 하며, 이 기구는 전문적으로 훈련된 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1960년 인구센서스 후 한국정부에 이양될 현대식 IBM 설비는 제표기능의 핵심을 이룰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통계자료처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자료처리소 역시 전문 표본조사기구처럼 통계국 내에 두되, 운영의 자율성을 상당 수준 보장하고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농업 발전에 필요한 통계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농림통계의 담당기구를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즉, 과(課)수준인 농림통계업무 담당부서를 국(局)수준으로 격상하든지 장관직속 하에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 내 통계활동의 개선을 위해선 통계조정 및 관리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별도의 통계조정기구(예: 미국, 영국, 일본)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통계국내에 그 기능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예: 캐나다)이 있다.

- 국세조사위원회는 그 권한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계위원회로 개편되어야 한다.

- 통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통계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 통계공무원에 대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각 대학에 통계학과를

신설토록 하고 통계학 과목 이수자를 통계공무원으로 우선 채용하고, 현재의 통계공무원에게는 재직자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 같은 한국정부에 대한 건의와는 별도로, 통계고문단은 1961년부터 3년간의 한국 통계기관들의 활동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한 개괄적인 평가와 함께 한국통계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조언이 담긴 보고서를 본국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1960년대 초 한국 내 통계활동의 수준은 통계조사의 객체도 정립되지 못했던 초보적인 단계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통계고문단이 한국 통계 전반에 걸쳐 평가한 내용이나 건의 사항들은 오늘날의 통계 발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예를 들면, 미흡한 통계조정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당시의) 통계국이 져야 하지만,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은 기관의 낮은 위상에서 기인하고 있다면서, 다른 기관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한 통계위원회의 기능도 형식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조사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⁶⁾. 그러나 그들은 한국통계발전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일천하였으며, 한국 통계와 관료의 속성, 사회적 분위기 등을 미국적 시각에서 평가하였던 문제점 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당시는 정부수립 후 곧이어 발발했던 한국전쟁으로부터 회복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통계의 부실성, 불완전성, 무책임성, 무계획성 등에 대한 통계고문단의 집중적인 지적은 다소 가혹한 면이 있었다고 하겠다.

3. 경제개발시대의 통계발전

1) 통계법령의 정비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각종 정책의 입안을 뒷받침할 기초자료인 통계의 개선책을 본격적으로 강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시도의 일

6) 농업표본조사의 경우, 조사담당직원의 전문지식과 필요 장비의 부족을 지적했었고, 노동력조사대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할 것과 표본추출, 조사표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또한 인구동태조사의 경우에도 표본수의 확대를 주장하였고, 신고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환으로, 정부는 1962년 1월 통계에 관한 기본법령으로 통계법을 제정·공표하였으며, 이어 통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차례로 제정하여 오늘날의 통계관계법령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이 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정통계와 일반통계의 구분이 보다 명확해졌으며, 통계의 신고의무와 불이행할 경우의 벌칙조항이 강화됨으로써 통계의 진실성을 크게 제고시켰다. 또한 종전의 인구조사법과 자원조사법, 농업통계보고령 등과 같은 관련 개별법령들 대부분을 새로운 통계법에 흡수시켰다.

이처럼 통계법령의 체계가 정비됨과 동시에 인구 및 주택센서스 시행규칙, 인구동태조사 시행규칙, 경제활동인구조사규칙 등을 위시하여 다양한 지정통계들에 대한 조사시행규칙이 지속적으로 제정 또는 정비되면서 1971년까지 총 25종의 지정통계조사에 대한 규칙이 완성되었다. 그 가운데, 1966년에 공포된 통계자료의 공표협약에 관한 규칙은 국내통계의 신뢰성과 정확성 및 일관성을 강화·유지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여겨진다. 한 마디로, 1960년대는 정부통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관련 조직의 발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1년에 통계국 소관사무가 내무부로부터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었고 1963년 12월에는 외국(外局)인 조사통계국으로 독립을 하였다. 그 후 1968년 2월에는 통계심의관이 신설되고 과의 수도 2개(소비통계과, 자료처리과)가 늘어 6개가 되었으며, 직원의 수도 261명으로 증가되었다. 1969년 12월에는 생산통계과와 물가통계과가 신설되어 8개 과가 되었으며, 이어 1975년 8월에는 조사통계국장 밑에 기존의 통계관리관 외에 2명의 담당관(통계 조사관, 자료관리관)을 추가로 두게 되었고, 자료관리과 등의 신설로 과의 수도 10개로 늘어남과 동시에 지방 8개 시·도에 지방통계사무소 조직⁷⁾을 갖추게 되어 통계 조직과 기능이 강화되고 중앙통계기구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어 1981년 11월에는 통계조사관, 통계심의관, 자료관리관이 통계기획관과 통계관리관으로 통합되는 한편 일부 과에 대한 기능조정 및 명칭 변경(공업통계과 → 통계분석

7) 본래 통계국은 1950년대부터 지방에 조사원을 파견시켜 왔었으며, 1963년 ‘통계조사지도원 및 조사원 복무규정’이 제정된 이후부터는 지방주재 지도원과 조사원을 통계국 기획과에서 직접 관리하여 왔다. 그 후 1975년부터 지방주재 조사조직을 지방사무소로 개편·강화시킨 것이다.

과, 상업통계과 → 유통통계과, 물가통계과 → 사회통계과, 제표과 → 자료처리과)이 있었으며, 8개의 지방사무소는 11개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농림업통계도 1971년에 기구를 과 수준에서 국 수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본부의 정원이 79명으로 늘었고, 그 동안 잡급직 신분이었던 조사원 및 통계요원 2,028명중 1,34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조사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신분의 안정성을 강화시켰다.

또한 정부의 통계조사에 관한 자문과 건의사항을 심의하는 통계위원회는 통계법에 의거 정부 주요관서의 통계관련 실·국장과 한국은행 및 주요 경제단체의 조사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여기에 학계와 사회지도급 인사들을 선임하여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특히, 개발연대에 해당되는 1960년대 말에는 통계업무가 크게 증가하여 전문분야별로 설치되는 분과위원회가 16개에 달했다.

이처럼 중앙통계국의 기구와 기능을 강화되는 한편, 지방에서도 지역통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1968년 각 시도의 통계계를 통계과로 승격시켰으며 각 시·군에도 통계전담계를 신설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다.

3) 제도적 정비

정부는 통계조직의 개편과 함께 통계활동의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단행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조치는 바로 주민등록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원래 이 제도는 본적지와 주소지가 달라 이를 인증할 목적으로 일본 식민지 시대였던 1942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나 신고가 매우 부진했었다. 이에 정부는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여 호적과 실제 생활과의 차이를 보충했을 뿐만 아니라 주거관계와 이동 상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공신력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에 1968년에는 이 법을 대폭 개정하여 호적과 관련되는 사항은 호적을 기준으로 하였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기관에의 통보를 제도화하기에 이르렀다. 현재의 주민등록제도는 호적상의 출생·사망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전출입의 경우에는 신고에 의하여 수정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자료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선거인명부의 작성, 취학통지서의 발급, 각종 공과금의 부과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무렵 주민등록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정통계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켰

다거나 각종 통계에 대한 공표협의 기능을 크게 강화시킨 점 역시 돋보인다고 하겠다. 또한 표준분류사업을 계속 연구함으로써 한국표준산업분류(1963년)를 비롯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등을 차례로 제정하였으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와 한국행정구역분류 등을 세계보건기구의 권고를 받아 새롭게 개정한 점도 주목받을 만한 업적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1960년대의 주요 통계간행물로는 각 기관마다 각종 통계연보, 월보를 비롯하여 각종 보고서들을 활발히 발간하였다. 그 중 1963년에 발간된 ‘통계용어정의집’이 특기할 만한데, 이는 정부수립이후 실시하고 있는 모든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1,734개 통계 전문용어들을 통계고문단이 학술적으로 해설해 놓은 것이다.

4) 주요 통계활동

개발시대에는 다방면에 걸쳐 통계에 대한 수요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많은 새로운 통계들이 개발되었다. 인구분야에서는 기존의 인구센서스, 분기별 인구동태조사, 상주인구조사가 지속되었으며, 주민등록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인구이동통계도 새롭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인구동태조사가 지정통계로 강화됨과 동시에 사인통계가 작성되고 생명표가 편제됨으로써 인구추계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인구동태조사는 신고에 의한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1963년부터는 1/1,000 표본에 의한 분기별 인구동태표본조사가 실시되었고 1968년에 인구동태특별조사와 인구이동조사가 실시됨으로써 동태조사의 내용을 개선해 나아갔다.

노동력조사는 일제시대였던 1930년에 전시동원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실업조사라는 명목으로 처음 시작하였는데, 이후 수차례의 명칭변경을 거쳐 내무부 통계국 시절이었던 1957년부터는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노동력접근방법에 의하여 매월 조사했었다. 이 조사는 1962년부터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칭하여 층화임의 다단계추출법에 의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였다. 다시 말해, 확률표본이론을 적용하여 1차로 읍·면·동을 추출한데 이어 2차로 4,400가구를 추출하였다. 조사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직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식이었는데, 회수율도 낮고 부실기재가 많아 실제로 집계가능한 조사표는 2,500

개 정도에 그쳤다. 당시에는 조사항목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아 조사결과 나타난 노동력인구, 취업자, 실업자의 수가 월별로 큰 기복을 보였다.

농업통계 활동 역시 그간의 유의표본추출방식에서 1965년에는 임의표본추출 방식으로 발전하였으며, 1960년 농업센서스 자료에 기초한 모집단, 층화, 추출률, 표본 및 추계오차 등의 관리가 채택되어 그 후 농업통계 전반에 걸쳐 확대 적용되었다⁸⁾. 농업통계뿐만 아니라 1970년에는 어업센서스도 실시하여 수산동식물의 채취나 양식에 관한 통계가 작성됨으로써, 농림수산통계는 이제 농가경제 및 농산물생산비, 농수산물유통통계, 농축산물 생산통계, 수산통계, 농산물무역통계, 농지기반통계, 농업자재통계, 임업통계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문을 포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노동청에서는 1952년 이래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온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이외에 1966년부터는 임금기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한국산업은행도 광공업표본조사와 광공업생산량조사를 독자적으로 실시한 한편,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과 공동으로는 광공업센서스를, 그리고 경제기획원, 상공부, 한국은행과 공동으로는 상업센서스를 새로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는 국민경제의 자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969년 처음으로 국부통계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 조사는 각 부문별로 담당기관이 별도로 조사한 뒤 경제기획원이 종합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당시 참여기관과 담당 업무는 한국은행은 정부 및 대외자산을, 한국산업은행은 법인자산을, 중소기업은행은 개인자산을, 그리고 경제기획원은 토지 및 가계자산을 조사하였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각종 조사결과를 분석·가공한 산업 및 경기에 관련한 통계들이 활발히 개발·작성되었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산업동향을 파악하는 산업생산지수를 비롯하여 제조업제품재고지수, 중소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농촌임금 및 임료금 지수, 그리고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통계, 기업경영분석, 기업원가분석 등이 있다. 이러한 2차 통계들이 활발히 작성되면서 국민소득추계업무 등도 본격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8) 이러한 진전은 농업센서스가 최초로 실시되었음이 계기가 되었고, 또한 농산물생산통계가 경제정책의 변수로서 지니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생산량조사 방법을 두고 관계와 학계에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졌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Ⅲ. 통계행정의 역사적 고찰 2: 경제사회 발전기~현재

1. 경제사회 발전기의 통계체계 정비

1) 경제사회의 발전과 신규통계의 개발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의 강력한 추진과 수출위주의 경제정책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분야에서의 통계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반면, 1960년대의 경제개발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들과 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면서 통계의 질적·양적 개선에 대한 압력이 거세졌다.

먼저 1970년대에는 통계법상 통계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조사통계국의 광공업동태조사, 건설업통계조사, 재고통계조사와 수산청의 어업생산고조사, 어업기본통계조사, 그리고 건설부의 건축물착공통계조사 등과 같은 통계들이 새롭게 지정되었다. 이로서 1970년에 223종(지정통계 24종)이었던 것이 1975년에는 307개(지정통계 28종)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통계종류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있어 보다 특징적이었던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전까지 총량통계·물량통계·생산 위주의 통계 작성에서 동태·이동·수주착공·기업체질·계층 같은 부문별 통계와 유통부문 관련 통계 및 농림어업부분에서의 농기구·농작물피해·양잠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통계들의 작성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둘째, 업종별 사업체수 조사, 영세사업체조사, 출산력조사,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산업재해조사, 국민영양조사, 사회복지시설조사 등이 실시되었으며, 사회문화적 통계로는 인구이동조사, 취학자통계, 가정의례준칙상황보고, 학생신체검사통계 등의 보고통계들도 새롭게 추가되었다. 셋째, 고용구조나 질병사인통계, 가족제도, 지역통계를 비롯해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별도의 사회통계를 개발하고 체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81년에는 지정통계 33종을 포함한 승인통계의 수가 427개로 크게 증가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를 대표하는 통계로는 국부통계, 고용구조통계, 생명표작성 및 사회통계를 위시로 하여 경기지표통계, 농가소득, 생산성지표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국부통계는 일정 시점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기반으로서 국민경제

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 총체를 파악하는 것으로 국민소득추계나 산업연관분석 등 Flow간의 계측과는 달리 국민대차대조표상의 Stock 자산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으로 고용구조통계는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세부 조사로서 노동력의 수급, 근로조건 내지 노사문제, 경영상태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1974년에 시작했었다. 이어서 생명표는 총인구조사간의 생산률을 이용하여 사망양태를 추정한 것으로 평균기대생명수준, 장래인구추계를 통하여 인구정책·국민복지·사회보전정책 및 경제정책 등에 활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사회통계는 사회통계 체계화에 관한 UN의 권고에 의하여 1978년에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인구, 소득·소비, 고용·인력, 교육, 보건, 주택·환경, 사회, 공안의 8개 부문 350개 지표를 가지고 출발하였다.

이 시기 경기에 관한 통계 역시 크게 개선되었다. 1960년대 초 무렵 한국은행에서 작성을 시작한 단기경제예측조사가 경기예고지표로 발전되었다가, 1981년부터 조사통계국이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함에 따라 이 지표의 작성은 중단되었다. 농업통계 또한 종전의 지방행정계통을 통한 보고통계방식을 1974년 농업기본통계조사와 작물통계를 시작으로 표본조사방법으로 개선하였고, 농산물조사에서도 조사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에 있어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차 부상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맞추어 국제통계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87~91)에 담겨져 있던 대외협력부문계획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대외협력부문계획에는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OECD 등과의 정책협조, EC 통합에의 대응,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대북방 경제교류, 미국 및 일본과의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와 간행물들이 출간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시 조사통계국에서는 ‘주요해외경제지표’를, 한국은행은 ‘세계 속의 한국경제’와 ‘주요국의 경제지표’ 및 ‘주간 내외경제’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세계경제동향 주요지표’를, 산업연구원에서는 ‘세계경제동향’과 ‘북방지역경제’를 각각 발간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국제통계자료 외에도 조사통계국에서는 주요 국제기구들, 즉 UN통계처, IMF, IBRD, GATT, ILO, FAO, OECD, UNDP, UNCTAD, ADB 등의 통계활동을 소개하는 ‘주요 국제기구의 통계

활동'이란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다.

2) 통계행정체계의 정비

특정 국가의 통계시스템은 중앙통계기관의 역할과 각급 통계기관의 자율성 정도에 따라 크게 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간 형태인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분산형의 특성이 가미된 정도가 높은 국가일 수록 각종 통계간의 연관성과 통계의 정확성, 효율성, 일치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계기준의 설정이나 종합조정 및 통계행정의 체제유지 기능을 담당하는 통계종합조정기관의 역할이 중요시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앙통계기관이자 종합조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은 1991년 1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경제기획원 외청으로 승격되면서 탄생하게 되었다. 당시 조직은 청장 밑에 기획국, 조사국 그리고 자료관리국과 1담당관, 16개 과, 그리고 11개 지방사무소와 5개의 지방출장소로 확대 개편되었으며 인원도 2000명 이상으로 증원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통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통계연수원도 함께 개원되었다.

한편, 통계정책의 입안과 집행, 그리고 조정을 주요 임무로 하여 1962년부터 설치되어 온 통계위원회, 실제로는 중앙통계기관인 통계청장의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지만, 역시 나름대로 발전을 하여 왔다. 통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당시에는 통계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으로는 재정경제원·내무부·농림부·통상산업부·정보통신부·환경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통계청의 간부와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한국개발연구원의 임직원 또는 통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고 있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기준·조정, 인구, 사회, 경제, 정보관리에 관한 분과위원회들을 두고 있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통계청으로 승격된 시기를 전후로 하여, 기타 정부기관 중에서는 농수산부의 통계기능이 상대적으로 가장 활발하였다. 보건사회부·노동부·상공부·체신부·내무부·재무부·법무부·문교부 등도,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비교적 활발한 통계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또한 비정부기관 중에서는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주택은행, 국민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농업

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인구보건연구원, 농업진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생산성본부, 대한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의 기관에서 기업경기, 기업재무실태, 무역통계 등의 소관업무에 대한 통계생산을 꾸준히 증가시켜 왔다.

이러한 통계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62년에 처음 제정된 통계법을 1975년에 개정되어 통계작성의 승인요건을 강화시켰고, 통계신고 및 자료제출요구의 강제성도 부가하였다. 또한 통계결과의 공표나 통계자료분류 및 통계간행물 발간승인 등은 통계기준·조정 기관으로부터 보다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동시에 통계작성자와 통계조사원의 자격 및 복무요건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통계조사상의 비밀보호나 통계자료의 통계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를 강화시켰다. 이와 함께 각급 기관의 통계자료에 대한 공표협의 규정도 강화하여 주요 통계의 공신력을 높이면서 통계조정대상도 조사통계뿐만 아니라 무역통계, 건축허가통계 등 보고통계들도 포함시킴으로써 국가통계의 체계 확립이란 기본 취지에 입각하여 통계조정행정으로 전환하였다. 한 마디로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통계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률적 요건은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되었듯이, 이 시기에 있어 우리나라 통계행정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가운데 통계부문의 발전계획이 처음으로 편성되어 추진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⁹⁾. 이러한 시도는,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그동안의 총량위주의 발전에 대한 반성과 함께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의 균형발전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통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계기로 통계청은 국가통계행정의 장단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면서 지역통계의 발전도 함께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도 역시 그 동안의 총량적인 경제성장 개발전략 위주에서 성장과 형평을 동시에 고려하는 종합적인 사회개발과 지역간 균형발전 전략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개발계획에 필요한 지역통계수요가 크게

9) 앞서 설명했듯이, 국가중앙통계기구가 조사통계국에서 통계청으로 승격되어 주요 기능들이 보강된 것을 비롯하여 통계연수원의 설립 등으로 통계의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계기도 바로 그러한 사실에서 기인하였다.

증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결과 지역통계는, 비록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행정보고통계가 대부분이었지만, 약 200여 종에 달하게 되었고, 이러한 통계들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목적에 따라 분류되고 있었다.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 사회지표, 경기종합지수, 지역소득추계 등 종합적인 분석·가공통계도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지역소득추계의 경우, 내무부 주관으로 1967년부터 각 시·도에서 실시하여 왔으나 추계체계나 자료의 유효성이 불완전하여 1986년에 작성이 중단되었고, 대신 1983년에 조사통계국이 개발한 지역추계 자료로 대체되었다. 또 1998년에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던 농림·수산물 관련 일부 통계업무와 조직을 통계청으로 이관하여 통계의 통합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역통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수요에 밀려 각급 지방자치 단체의 통계담당 부서와 인력들은 오히려 위축되는 현상을 보임으로써, 더 이상의 지역통계의 발전은 기대하기 곤란했다.

또한 이 무렵 사회개발에 관한 지표는 보건사회 관련통계를 중심으로 정비되어 있는데, 이는 제6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통계부문계획과 보건사회부문계획이 조화롭게 추진됨으로써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즉, 의료 등 보건 분야와 국민생활, 국민건강, 영세민 통계 등은 물론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사회보장, 국민연금제도,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지표들이 구축되었다. 이로써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물량중심지표들이 보완되고 국민복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됨으로써 복지정책의 방향과 흐름을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공공부문에서의 통계행정이 나름대로 꾸준하게 질적·양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통계에 대한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인력이나 조직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통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과 행정상의 풍토 역시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이라고 하겠다.

2. 정보화·지방화·국제화 시대의 통계

1) 급변하는 통계환경

사회가 선진화되어 감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은 발전과 형평 및 국민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반면,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또한 이미 우리 주변에 일상적 현상으로 자리를 잡은 정보화·지방화·국제화 시대는 계속해서 심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계분야에서도 지금까지의 총괄적 발전계획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는 날로 거세지고 다양화되는 사회적 통계수요들을 충족시켜 나가는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통계생산의 기반을 구축해감은 물론 통계제도, 통계행정, 통계분류, 통계의 품질관리 측면에서도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끝을 모르게 심화되어 가고 있는 정보화 사회가 통계관련 행정에 미치고 있는 다양한 직·간접적 변화의 압력들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대표적인 예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비중을 감안한 통계조사기법의 개발 및 적용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인류사회가 복잡·다양화해지면서 통계조사의 대상인 응답자의 전달정보가 점차 세분화되어 가는가 하면, 프라이버시 문제나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적 문제 등과 관련된 거부반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¹⁰⁾. 이러한 응답자들의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조사설계 기술의 개발을 비롯해 전반적인 조사기술체계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10) 정보화의 진전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 및 국민의식의 변화로 통계생산 과정, 특히 조사단계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선 개인 및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조사에서는 국민 전반에 걸친 사생활 중시 현상,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감 증가 등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응답 거부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또 맞벌이 가구, 독신자 가구의 증가로 통계조사원과 조사대상자 간의 대면접촉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사원의 부담과 조사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사업체들 역시 통계조사에 응답한 정보가 통계목적과 달리 사용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응답 기피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사회통계조사의 응답거부율은 2002년에는 3.0%였으나, 2006년도에는 5.5%로 크게 높아졌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41세인데 비해, 농가경제조사의 가구주 평균연령은 63세에 이르고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농촌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는 통계조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어서 지방자치의 본격 추진에 따른 지역별 자료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에도 이미 시·도 단위로 일부 지역별 통계들이 작성되고 있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통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역통계는 지역별 특성이 감안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각종 통계들에 주목하여 그 작성의 목적 및 방법, 그리고 활용분야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향후 조사·작성해야 할 통계의 종류를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할 것이다. 즉, 통계에 대한 미래의 수요를 예측·대비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통계작성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정·보완해 나아가는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가한다면,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따라 향후 남북간 통계의 통합에 대비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비전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에 기초한 실천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독일의 사례를 참조해서라도 사회주의 국가의 통계체계를 연구하여 통계 통합시 자료의 지역간 비교분석 및 시계열 분석에도 차질이 없도록 대비함이 바람직 할 것이다.

2) 변화에 부응하는 통계제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날이 새로워지는 통계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계청을 위시로 하여 농림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과 같은 정부기관, 그리고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같은 민간기관들로 구성된 통계작성기관들의 수는 물론 그들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의 종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07년 12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390개 통계작성기관에서 총 1,036종의 각종 통계가 활발히 생산되고 있다.

연도별 사회통계조사 불응률(가구기준)

조사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불응률(%)	3.0	3.9	3.6	4.2	5.0	5.5

〈표 1〉 연도별 통계작성기관 및 승인통계

	2003년 1월	2004년 1월	2005년 1월	2006년 1월	2007년 1월	2007년 12월
기관수	134개	132개	136개	137개	159개	390개
통계수	434종	455종	474종	498종	736종	1,036종

이밖에 통계청에서는 자료수집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오류는 줄이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체의 경우 직접 입력방식을 도입했으며 조사원으로 하여금 노트북을 이용하여 현지에서 직접 입력토록 하고 있다. 또한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의 관리나 보급 측면에서도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KOSIS(한국통계정보시스템)¹¹⁾을 개발하고 인터넷이나 CD에 의한 새로운 방식으로의 자료 보급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등 통계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작성기관 및 승인통계의 증가, 자료 수집 및 제공 방식의 개선과 같은 변화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최근 노무현 정부(2003.2~2008.2) 시절에 크게 강화되었던 국가통계의 인프라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1990년 이래 1급 청장에 머물러있던 통계청장의 직급을 2006년에는 정무직으로 승격시켜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크게 제고시켰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으로 통계개발원이 신설되어 통계의 생산, 보급 등 여러 가지 기법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다양한 통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외형적인 인프라 이외에도, 2007년에는 통계법을 개정하여 통계책임관 제도(통계법 제6조), 통계품질진단제도(통계법 제9~11조) 및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통계법시행령 제33조) 등을 실시토록 하여 통계작성기관의 통계행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크게 강화시켰다. 즉, 통계작성기관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하고, 통계청과 통계작성기관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 고품질

11) 한국통계정보시스템(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ystem; KOSIS)은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계청을 위시로 한 정부기관, 한국은행, 공공기관, 외국, 국제기구 등에서 작성된 인구, 산업, 국제통계 등을 비롯한 20개 분야 500여종의 국내외 주요 통계를 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소 등은 물론 민간 기관 및 개인에게도 제공하는 온라인 통계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의 통계가 생산·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그리고 ‘통계기반 정책관리 제도’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정책효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도록 통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정부정책의 성공확률이나 고객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론: 요약 및 향후 발전방향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통계기구의 발전 역사를 간략히 요약해 본다면, 해방이후 통계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비록 다소의 곡절이 있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통계를 생산·공급하는 정부의 통계기구는 계속 확대 발전해 오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급증하는 통계수요에 대응하려다 보니 거의 대부분의 정부기관은 물론 공공행정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민간기관들에게도 자연발생적으로 자체의 통계 부서가 만들어져 해당 분야의 통계를 생산해내는 분산형 통계시스템의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기구의 발전과 더불어 통계관련 행정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 할 수 있는 통계조사방법도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초기의 통계생산방법은 주로 인구 총 조사와 행정업무의 부산물인 행정통계, 보고통계 그리고 유의표본조사에 의한 통계가 주류를 이루다가, 1960년 이후로는 유의표본이 확률표본 추출법으로 전환되기 시작했으며 행정통계와 보고통계의 많은 부분이 확률표본에 의한 표본조사로 전환되게 되었다. 각종의 총 조사도 10년 간격에서 매 5년 단위로 실시됨으로써 표본조사를 뒷받침하는 시대적 특징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통계선진국의 대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실행시켜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통계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려면 통계기능 전반에 걸쳐 집중화·통합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우리나라 통계제도는 분산적 성격이 강해 통계조정기능은 물론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제재장치마저 크

게 미약한 실정이다. 특히 중앙통계기구의 부실한 조정기능으로 인하여 통계관련 기구와 장비, 전문 인력의 통합적 운영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통계 기능의 집중화·통합화는 독일, 호주,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국가에서도 발견되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통계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조사체계의 효율화, 조사기관간의 협력증진 등이 제고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객관적으로 공식통계를 생산·보급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통계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통계위원회를 격상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기구로 상설화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최근 경제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빠르며 통계이용자의 수요 또한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이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계의 개발과 기존 통계의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IT·BT를 위시한 지식기반서비스업 부문과 문화콘텐츠 부문에 관한 통계의 개발이 절실하며 연구개발(R&D)에 관한 통계의 개선·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또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정보화관련 통계를 비롯하여 아직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부문의 통계는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의 통계조사는 주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고령자, 사회봉사 등에 관한 복지통계는 크게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변화와 함께 남북한의 교류가 활발하고 북한의 개방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하여 북한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도 시급한 실정이며, 국가간 통계기법의 교류도 더욱 증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물가통계의 경우에도 품질과 가격의 변화까지도 반영될 수 있도록 품질보정 물가지수산정기법(Hedonic)을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통계의 품질개선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통계품질의 개념은 다른 나라 통계기관에서도 중요한 신 개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통계의 품질이란 정확성·신속성·효율성·비교가능성 이외에도 통계가 얼마나 사용자에게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되고 제공되었는지의 ‘이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r)’이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하는 개념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통계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품질진단지표의 개발을 비롯하여 통계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그리고 통계

작성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이미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조사환경의 악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료수집방법을 개선하고 무응답에 대한 처리기법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자면, 종전의 방문·면접조사방식을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전자가계부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물론 과세자료, 주민등록자료, 건축물대장 등과 같은 행정자료들을 적극 공유·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정 기간 계속해서 조사하는 고정표본조사 대신 표본의 일부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연동표본제도의 본격 실시 등을 통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러 기관의 각종 통계조사를 통합하여 조사대상처의 응답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이후에도 지방통계는 이렇다 할 발전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현안의 실적 쌓기에 급급했던 대부분의 단체장들이 당장은 시급해 보이지 않았던 통계 조직과 인력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활용한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일선행정을 맡았던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대규모 조사를 담당할 행정조직의 가동마저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처럼 지방통계행정의 어려움은 오히려 가중되었지만, 최근에 오면서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여러 정책들을 입안·시행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선 지역통계의 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할구역의 지역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초기단계이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산업의 생산, 유통뿐만 아니라 분배에 이르는 전 과정의 통계를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행히도 통계청이 예산 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통계법 제13조) 지방통계의 조직과 인력이 보강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지역통계의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밖에 통계생산뿐만 아니라, 통계의 보급 측면에서도 많은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통계자료를 보급할 때 과거의 보고서 방식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야 하며, 나아가 통계정보와 지리정보를 결합한 새로운 형

태의 공간통계정보를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계작성기관과 수요자와의 연계 증진을 통해 통계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함께 선진국의 경우처럼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의 맞춤형 통계를 작성·보급하는 기법의 발전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전반적으로 낮은 통계에 대한 이해와 인식 수준의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통계행정 관련 조직과 인력의 질적 개선 및 양적 확대를 위해 획기적인 조치의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 번.(1997). 「우리나라 통계제도와 통계청의 역할」.
- _____.(1998). 「통계의 생산과 이용에 관한 실무적 고찰」.
- 송문섭. 「공식통계의 과거·현재·미래」, 8: 21-26, 한국통계학회논문집.
- 통계청.(1992). 「한국통계발전사(I)(II)」.
- _____.(1996). 「통계업무편람」.
- _____.(1998). 「통계연혁」.
- _____.(1999). 「통계청 조직변천」.
- _____.(2006). 「정부승인통계목록」.
- _____.(2007). 「살아있는 통계 변화하는 통계청」.
- 통우회.(1991). 「한국통계발전사(III)」.
- 한국통계진흥원.(2008). “근대통계 도입에서 통계청까지” 「통계의 창」, pp. 33~41.

□ 부록 1: 조직·인력·기능의 변천 개요

일자	주요 내용
1945. 9. 6	미군정법령에 의해 미군정청 서무처 통계서 신설. 통계서에는 5개과(서무과·인구과·가계과·노동과 및 동태과)가 설치됨.
1947. 5. 17.	미군정법령 제141호에 의해 남조선 과도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통계업무도 남조선 과도정부 서무처 통계서에 이양됨. 당시 통계담당과는 4개과(서무과·관리과·가계과 및 인구정태과)가 설치됨.
1948. 11. 4.	대통령령 제15호에 의해 공보처 소속으로 통계국을 설치함. 통계국에는 4과(서무과·기획과·국세조사과 및 인구조사과)가 설치됨.
1955. 2. 17.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공보처의 통계업무가 내무부로 이관됨. 내무부 통계국에는 3개과(기획과·국세조사과 및 인구조사과)가 설치.
1961. 7. 2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내무부 통계국 소관사무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됨. 경제기획원 통계국에는 통계기준과·인구통계과·경제통계과 및 편수과의 4개과가 설치됨.
1962. 6. 29.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조사통계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그 밑에 조사분석과·통계기준과·인구통계과·경제통계과 및 편수과의 5과 설치.
1963. 12. 1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경제기획원의 외국으로 개편되고, 이어서 통계기획과·통계기준과·인구통계과 및 경제통계과가 설치됨.
1968. 2. 14.	조사통계국 밑에 통계심의관이 신설되고 통계기획과가 기획과와 자료처리과로 개편됨. 또 경제통계과에서 소비통계과를 분리 신설함.
1969. 12. 18.	생산통계과와 물가통계과를 신설함.
1975. 8. 14.	국장 밑에 통계조사과 및 자료관리관이 신설되고 자료관리과와 8개 지방사무소가 신설됨. 또 생산통계과가 산업통계과로 변경되고 재고통계과가 폐지되는 대신 조사관리과 신설됨.
1978. 9. 23.	잡종직 통계조사요원을 별정직으로 전환함.
1981. 11. 2.	통계심의관을 폐지하고 일부 과에 대한 기능조정 및 명칭을 변경함. ·공업통계과 → 통계분석과 ·상법통계과 → 유통통계과 ·물가통계과 → 사회통계과 ·재 표 과 → 자료처리과 - 일반 행정직을 행정직렬과 통계직렬로 구분함.
1990. 4. 7.	서울·경남 및 제주통계사무소가 신설되고 부산 및 경기도 통계사무소 소장의 직급이 격상됨(5급 → 4급). - 출장소설치 규정(총리령 제366호)이 마련되어 5개 출장소가 설치됨
1990. 12. 27.	조사통계국 직제가 폐지되고, 통계청으로 승격
1991. 9. 13.	통계청 소속하에 통계연구원을 설립(2과 22명)됨. 또 지방통계사무소 일용직 조사원 225명을 별정직 9급 상당으로 정규직화(92.1.1부터 시행), 전남·경북 통계사무소소장의 직급이 격상됨(5급 → 4급).
1994. 1. 17.	과장보좌 서기관제 도입

1995. 2. 8.	자료처리국을 자료관리국으로 명칭 변경, 전산계발과를 폐지하고, 통계정보과, 국제통계과 신설, 별정직 조사원 △29, 기능직 사무보조원 △58
1995. 4. 12.	4급 정원중 3인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으로, 5급 정원중 8인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조정, 기능직 10등급 정원 10인을 기능직 9등급으로 상향 조정
1996. 6. 29.	복수직 확대 실시, 중견관리자 요원 확충(3·4급 +2, 4·5급 +9, 5급 +8, 6·7급 △10), 소속기관에 4·5급 복수직 확대 실시
1996. 9. 24.	통계조사국의 기능 보강을 위해 통계심의관(3급) 신설, 인구통계과를 인구조사과와 인구분석과로 분리 개편, 통계연구원에 교육연구과를 신설하고, 서무과와 교학과를 통합하여 교무과로 개편
1997. 3. 20.	기능직공무원 합리화 계획에 의거하여 본청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7인과 10등급 운전원 1인을 감축하고, 소속기관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2인과 10등급 방호원 2인 감축
1997. 8. 13.	작은정부 지향정책과 실무기획인력 보강을 위해 6·7·8급 각 9명씩 27인 중, 9인은 5급 정원으로, 18인은 감축(순증 △18인)
1998. 2. 19.	본부의 청사시설관리 기능직공무원 9명을 총무처로 이체(9등급 방호원 △1, 10등급 교환원 △2, 10등급 전기원 △1, 10등급 방호원 △5)
1998. 2. 28.	정부조직개편에 의한 직제개편에 따라 통계조사국을 경제통계국과 사회통계국으로 분리, 자료관리국의 명칭을 통계정보국으로 개칭하고 일부 과명칭도 변경(산업통계1과 → 산업통계과, 산업통계2과 → 산업동향과, 자료처리과 → 정보처리과), 종전의 통계심의관과 전산담당관은 폐지하고 전산처리개발과를 신설, 국제통계과의 소속국 변경(자료관리국 → 통계기획국) - 인력면에서는 지방사무소의 8급 △1인, 9급 상당 △10인 감축(순증 △11인)
1998. 7.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농수산통계작성기능이 통계청으로 이관되어 사회통계국에 농수산통계과를 신설 - 지방통계사무소에 26개소의 출장소를 신설 - 농림부 공무원 410인(6급 55인, 7급 109인, 7급상당 37인, 8급 134인, 8급상당 68인, 9급상당 7인)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90인(5급 1인, 6급 3인, 7급 8인, 7급상당 26인, 8급 9인, 8급상당 43인)을 통계청으로 이체함. - 기능직공무원 합리화 계획에 의거하여 본청 기능직 10등급사무원 7인과 소속 기관 기능직 10등급사무원 2인 감축(1998. 8. 1)
1999. 1. 1.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정비계획에 따라 통계청소속 통계연수원을 폐지 - 통계연수기능을 행정자치부 소속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통계연수부로 이관(교무과 → 교학과) - 통계연수원의 교육연구과를 개칭하여 통계기획국 통계개발과로 이관
1999. 5. 24.	21세기 신지식·정보화의 시대에 대비하여 정부기능을 핵심역량 위주로 재편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 통계기획국의 통계개발과 폐지 - 경제통계국에 서비스업통계과 신설하고 유통통계과를 물가통계과로 개칭. - 전문인력의 채용 원활화를 위해 통계청의 전산직공무원 및 통계사무소의 통계조사 담당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2000. 2. 28.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거 통계정보국장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도 보할 수 있게 함
2000. 12. 30.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
2002. 5. 6.	간호서기(8급) 1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
2002. 12. 30.	어업생산통계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함(29명을 해양수산부로 이체)
2004. 1. 29.	통계연구과 신설(+19명) 및 본청·지방사무소 직급 상향조정
2004. 3. 22.	기획과를 혁신인사과로 개칭함
2004. 12. 31.	행정자치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산하의 통계연수부를 통계청으로 이관 - 통계연수부를 통계교육원으로 개칭 (1계과 증설)
2005. 3. 2.	연구사 증원(+1명) 및 본청·지방사무소 직급 상향조정
2005. 4. 15.	정책홍보, 재정기획 인력 증원 (4급 또는 5급 +1, 5급 +1) - 개칭 : 통계기준과를 통계정책과로, 통계조정과를 통계협력과로, 조사관 리과를 지역통계과로, 통계연구과를 통계개발팀으로, 인구분석과를 인구동 향과로, 사회통계과를 고용복지통계과로, 정보처리과를 정보화기획과로, 자 료 관리과를 행정정보과로, 통계정보과를 정보서비스과로 개칭 - 신설 : 서비스업동향과, 통계지리정보팀을 신설
2005. 7. 22.	차관급 승격 - 정책홍보관리관, 재정기획관, 정책홍보담당관, 품질관리과 신설 - 15인(정무직 +1, 2·3급 +1, 4급 +3, 5급 +2, 6급 +4, 7급 +2, 기능직 +2) 증원
2006. 5. 21.	전산장비의 운영·관리인력 6인(6급 1, 8급 2, 기능 3)을 정보통신부로 이 관
2005. 11. 30.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 선정
2005. 12. 30.	11개 지방청 및 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 추가지정
2006. 2. 8.	공무원노조관련 인력 증원(5급 +1)
2006. 6. 29.	통계개발원 신설 (고위공무원단 1, 4급 3, 5급 17, 6급 15, 7급 3, 기능 1) 대전·충남지방통계청 승격(5급 +3, 6급 +1), 지역통계인력 증원(6급 +5)
2006. 12. 7.	통계개발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새로 지정 제주통계사무소 인력 1인(기능직 -1)을 행정자치부로 이체
2006. 12. 29.	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 승격(4급 +2, 5급 -2)
2007. 2. 1.	정보화 담당인력 증원(5급 +1)
2007. 4. 20.	소요정원으로 확정된 인력 8인 증원(5급 +4, 6급 +4)
2007. 8. 22.	대변인제도 도입(정책홍보관리관이 대변인 겸임)

부록 2: 통계작성기관별 통계작성 현황

통계작성기관별 통계작성 현황

(단위: 개, 종)

구 분	작 성 기관별	작 성 통계수	종 류 별		작 성 방 법 별		
			지정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계	389	1,016	95	921	367	586	63
○ 정 부 기 관	308	833	79	754	244	541	48
- 중앙행정기관	45	463	63	400	163	279	21
· 통 계 청	1	56	40	16	44	1	11
· 이 외 기 관	44	407	23	384	119	278	10
- 지방자치단체	263	370	16	354	81	262	27
· 시 · 도	16	83	16	67	39	16	28
○ 지 정 기 관	81	183	16	167	123	45	15
- 금 융 기 관	10	35	9	26	22	10	3
- 공 사·공 단	24	47	2	45	21	22	4
- 연 구 기 관	13	28	2	26	24	1	3
- 협 회·조 합	26	56	3	53	46	7	3
- 기 타 기 관	8	17	0	17	10	5	2

자료 : 통계청, 「정부승인통계목록」 2006년 3월